

# **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**

## **심사보고서**

2025. 10. 27.

사회건설위원회

### **1. 심사경과**

가. 발의일자: 2025년 10월 2일

나. 발의자: 이성수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5년 10월 15일

라. 상정일자: 제26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(2025. 10. 20.) 상정 의결

### **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성수 의원)**

#### **가. 제안이유**

- 사회적·심리적·경제적 요인으로 고립된 청년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과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#### **나. 주요내용**

-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고립청년 발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위원회의 심의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전문가 자문, 상담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12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류데레사)

#### □ 제정 배경 및 취지

- 국무조정실 「2024년 청년 은둔 실태조사」에 따르면, 은둔청년은 약 54만 명으로 2022년(2.4%) 대비 두 배 이상 증가한 전체 청년의 5.2%에 달하며, 주요 원인은 ▲취업의 어려움(32.8%) ▲인간관계의 어려움(11.1%) ▲학업 중단(9.7%) 등 다양한 요인으로 나타남.
-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 및 저출산으로 생산가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고립청년 문제는 개인의 생활 문제를 넘어 국가적 차원의 인적자원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사회적 대응이 필요한 과제로 부상함.
- 또한 사회적 고립청년은 신체활동 부족, 사회적 관계망 단절 등으로 인해 정신적·신체적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며, 이는 장기적으로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.
- 이에 본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정의를 규정하고, 실태조사·지원사업·민간 전문가 활용 등 다양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청년이 건강한 지역사회 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임.

#### □ 주요 내용으로

- 안 제2조(정의)는 “청년”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른 청년의 범위로 규정하고, 사회적 고립청년의 개념을 정의하여 조례 적용대상과 정책 추진의 대상을 명확히 함.
- 안 제3조(구청장의 책무)는 구청장이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, 이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안 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 조례를 우선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.
- 안 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방향, 추진목표, 전달체계 구축, 재원 조달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체계적인

지원정책을 추진하도록 함.

- 안 제6조(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)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, 복지관, 경찰서 등 지역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을 조기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자 함.
- 안 제7조(실태조사 등)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경제상태·생활양식·정신건강 등을 3년마다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 여건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, 조사·연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안 제8조(위원회의 심의)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수립·점검·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에 따른 청년 정책위원회에서 심의·자문하도록 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함.
- 안 제9조(지원 사업)는 사회적 고립의 주요 원인인 일자리·인간관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공동체 참여, 일자리, 심리·정서, 사후관리 사업 등 다각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, 이를 수행하는 기관·단체에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- 안 제10조(민간전문가 활용)는 지원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전문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함.
- 안 제11조(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)는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이해를 높이고 청년의 회복 및 자립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.
- 안 제12조(협력체계 구축)는 중앙행정기관·타 지방자치단체·관련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정책을 추진하고자 함.
- 안 제13조(표창)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추진에 공로가 큰 단체나 개인 등을 표창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사회 참여를 독려하고 민간의 협력을 활성화하고자 함.
- 안 제14조(비밀 준수의 의무)는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업무 종사자의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명시하여, 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□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반의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사회적 고립 청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, 주요 원인에 대응하는 지원사업 추진과 실태 조사 근거 및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 고자 함.
  - 이를 통해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을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,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며 청년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

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성수 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620
--------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5. 10. .  
발 의 자: 이성수·최인순·임현호  
김지연·정선희 의원(5인)

## 1. 제안이유

사회적·심리적·경제적 요인으로 고립된 청년을 조기 발굴하여 맞춤형 지원과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다른 조례와의 관계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~제5조)
- 라. 고립청년 발굴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6조~제7조)
- 마. 위원회의 심의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8조~제9조)
- 바. 전문가 자문, 상담 교육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10조~12조)

## 3. 제정안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 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청년”이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..
2. “사회적 고립청년”이란 사회적 · 심리적 · 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,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.

제3조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(이하 “지원정책”이라 한다)을 마련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5조(기본계획 수립 등)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

본계획(이하 “기본계획”이라 한다)을 수립할 수 있다.

1.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
  2.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
  3.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
  4.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
  5. 사회적 고립청년 사업 홍보 사항
  6.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
-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.

제6조(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)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체 및 복지관, 경찰서, 고립청년지원기관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및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- ②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밀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은 지역단체 및 고립청년지원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제7조(실태조사 등)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, 생활양식 및 정신건강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고, 관련 통계정보를 수집·관리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.

-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

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위원회의 심의)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」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 받을 수 있다.

1. 기본계획의 수립·변경
2. 지원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
3.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
4.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9조(지원 사업)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.

1.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
2.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
3. 사회적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
4. 사회적 고립청년 심리·정서 지원 사업
5. 사회적 고립청년 범죄피해 예방 사업
6. 문화·예술·체육 활동 등의 지원 사업
7. 위기 개입 및 사례관리 사업 연계
8.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
9.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10조(민간전문가 활용)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정책 마련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대학

· 법인 ·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자문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1조(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)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.

제12조(협력체계 구축)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,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.

제13조(표창)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구현에 공로가 큰 단체 및 개인 등에게 「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」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.

제14조(비밀 준수의 의무)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을 준수하여야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